

2019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농림축산식품부	재해보험정책과	과 장 문석호	044-201-1791
		사무관 임채홍	044-201-1792
		주무관 이병길	044-201-1797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
-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

2. 근거법령

- 농업인안전보험
 -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등의 재정지원)
- 농기계종합보험
 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 (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및 재해 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

성과지표	'19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 방식
		'16	'17	'18		
▪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(%)	65.0	55.5	54.3	63.3	'20.1	(당해년도 안전보험 가입건수 / 농림업경제활동인구)×100
▪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(천건)	92	60	79	93		보험가입 건수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합 계	125,628	116,190	116,650	140,004
보 조	62,814	58,095	58,325	70,002
자부담	62,814	58,095	58,325	70,002

5. 사업 운영

- 사업주관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“농식품부”)
- 사업관리기관 : 농업정책보험금융원(이하 “농금원”)
 -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관리·감독,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의 연구·보급,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,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, 통계 생산 및 관리 등
- 사업시행기관 :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(이하 “보험사업자”)
 - (농업인안전보험) NH농협생명, (농기계종합보험) NH농협손해보험

II.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농업인안전보험 : 만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(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)
 - * 일반1형·일반2형은 만 15~87세, 일반3형·일반4형·일반5형·산재1형·산재2형은 만 15~84세
 - ※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: 만 15~87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-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(지역농협 포함)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

2. 보험 사업자

- 농업인안전보험 : NH농협생명
- 농기계종합보험 : NH농협손해보험

3. 국고 지원자격

- 농업인안전보험 :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
 -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
 -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
- ※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
 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 일용근로자(만 15~87세)를 고용하여 농작업에 종사케 하는 경우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가입
-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(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)
 - 대상 농기계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
- ※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(또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)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 실시

4. 국고지원범위

- 농업인안전보험 :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% 이상 지원
 - ※ 영세농업인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은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70% 지원
- 농기계종합보험
 - 농기계담보 :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%를 지원하되, 할증요율 120% 이내에 한함
 - 대인배상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, 적재농산물 : 보험료의 50% 지원

5. 보험가입 절차

○ 보험가입 절차

- 보험가입 안내(보험사업자) → 가입신청(농업인) →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(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) → 보험증권 발급

6. 보험상품 연구 개선

- 농금원과 보험사업자는 농작업재해와 농기계사고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, 보험상품에 대한 연구를 추진

7. 통계생산 및 관리

- 농금원은 보험 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, 보험상품에 대한 연구 등에 활용
- 보험사업자는 농금원에 보험 통계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

8.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

- 보험사업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
- 보험사업자는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

9. 보험금의 지급

○ 지급시기

-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,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'3영업일'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(다만,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'10영업일' 이내에 지급 가능하며,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)

○ 지급절차

-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→ 현지조사(필요시) → 보험금 지급(보험사업자)

-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·운영 하여야 함

10. 기 타

-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, 「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, 보험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
- 보험료율 적용, 보험료 할인·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
-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(농작업 대행 포함) 농기계, 항공방제기,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지역농협이 부담하고,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
- 보험사업자는 단체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발송하여 가입 내용 등에 대한 안내 실시
- 보험사업자(신규 사업 참여자 포함)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4월 30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(計上)을 신청(별지)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계상

사업주관기관(농식품부)

- 세부사업 기본계획(사업대상, 지원조건, 보조율, 사업기간 등)을 농금원 및 보험사업자에게 시달

사업관리기관(농금원)

-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,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회의 운영,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홍보, 통계관리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
- 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(법 제14조, 제22조 및 시행령 제8조)
 - 약정기간, 재정지원, 업무범위, 자료제출, 준수사항
 - 보험사업자의 재무건전성, 정책보험사업추진 능력 등을 검토 후 약정 체결

사업시행기관(보험사업자)

- 자격요건
 -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
- 사업계획의 수립
 - 보험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사업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사업약정 체결
 - 농금원과 약정 체결 시 사업계획서, 보험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등 서류를 농금원에 제출

2. 사업준비 및 시행

사업관리기관(농금원)

-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,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회의 운영,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추진
- 상품 및 제도개선을 위해 “상품개선회의”를 구성·운영
 - 조직구성: 농식품부, 농금원, 보험사업자 등
 - 개최시기: 농업인안전보험, 농기계종합보험 각 반기별 2회(단, 필요시 수시 개최)

사업시행기관(보험사업자)

- 사업시행
 - 보험사업자는 농금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
- 판매자에 대한 교육
 - 사업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
- 주요변경사항의 사전 합의
 - 보험료율 및 보험약관 등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시 농금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

3. 보험 가입

가입자(농업인)

- 농업인안전보험,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

사업시행기관(보험사업자)

- 약관의 설명
 -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,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, 피보험자 각 개인에게 서면으로 안내장을 발송하여야 한다.
- 청약서 및 가입서류 확인
 -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
 - 보험사업자는 가입자가 농업인임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
 - 임업인의 경우 임업인 확인서 또는 산림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,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
 -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노력

○ 보험계약 체결

-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

4. 보험금의 지급

가입자(농업인)

○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

- 재해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사업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, 보험금 지급 신청

사업시행기관(보험사업자)

○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,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‘3영업일’ 이내에 보험금 지급

- 다만,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‘10영업일’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,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

○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및 기구를 설치·운영

5. 사업비 배정 및 집행

사업주관기관(농식품부)

○ 보험사업자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

○ 보험사업자가 배정된 사업비를 반납할 경우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배정

사업관리기관(농금원)

○ 보험사업자의 가입현황서, 사업비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보고

○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

사업시행기관(보험사업자)

- 사업비 신청
 - 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
- 사업비 집행
 - 가입자의 보험가입 신청 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함으로써 집행
- 사업비 정산
 - 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농금원에 보고

6. 이행점검

사업관리기관(농금원)

-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가입 및 지급실태,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
- 점검대상 및 일정
 - 점검대상 : 보험사업자,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, 보험가입자
 - 점검일정 : 반기별 1회 이상(필요시 수시점검)
- 점검항목
 -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: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, 보험금 지급현황, 보조금 사용 내역 등
 - 사업실적 :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실적 등

사업시행기관(보험사업자)

- 보험 판매자 교육 실시
 - 가입절차, 보장내용, 보험금 지급 절차, 국고지원 내역 등을 보험 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
- 자체 점검 실시(수시)
 - 보험판매자(대리점 등)의 보험 판매 실태를 점검

7. 제재

사업관리기관(농금원)

- 보험사업자, 지역 대리점 및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·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,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 기관의 징계, 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을 보험사업자 등에 요구

(보험사업자는 위의 조치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지체없이 제출)

사업시행기관(보험사업자)

- 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
 -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
 -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
 -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
 -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

8. 성과측정

- 성과지표 측정
 -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다음해 1월 보험사업자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
- 만족도 조사(설문지 방법)
 -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까지 농금원에 제출

9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《사업평가》

가. 원 칙

-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률, 가입대수, 보조금 집행실적, 농업인 민원·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

나. 사업평가 요령

- 평가주관 및 기간 : 농금원, 익년 3월
- 평가대상 : 보험사업자
- 평가기준 : 보험가입률, 가입대수, 보조금 집행 현황, 민원 발생현황 등

다. 사업평가 실시 절차

- 농금원은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
- 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가입현황, 보조금 집행현황(매년 12월말 기준),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 보고서를 농금원에 제출(익년 1월 31일까지)

라. 평가 후 사후관리

- 농금원은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정산 및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고,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
- 부진항목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
- 농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

《환류》

- 보험사업자는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

[별지]

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예산 계상 신청서

1. 신청인 현황(□ 계속, □ 신규)

사업자명			사업자번호		
대표자명			전 화 번 호	()	-
주 소					
담 당 자	직 위		휴대전화		
	성 명		이 메 일		

2. 신청내역

사 업 명			
사업목적			
사업내용			
사 업 비	계(천원)	자부담	보조 (예산 계상 신청액)
사 업 비 산출근거			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 년도 농업
인안전재해보험 사업 예산 계상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 : 사업계획서 1부(별첨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[별첨]

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계획서

1. 사업 개요

2. 사업자 현황

3. 사업 실적

상품명	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				
	구분	'16	'17	'18	'19(계획)
	가입자(명)				
	보조금(천원)				

4. 사업의 목적 및 효과

5. 사업 수행계획

6. 사업비 명세